

KMI 동향분석

VOL.120
2019 MAY

발간년월 2019년 5월(통권 제12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김민수 KMI 극지연구센터 센터장
(guan72@kmi.re.kr/051-797-4787)
김지혜 KMI 극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이슬기 KMI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김종덕 KMI 정책동향연구본부 본부장
(jdKim65@kmi.re.kr/051-797-4751)
신형철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 부장
(hcshin@kopri.re.kr/032-770-8430)
한승우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실장
(gogoha@kopri.re.kr/032-770-8420)
서현교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책임기술원
(shkshk@kopri.re.kr/032-770-8422)
정지훈 극지연구소 국제협력팀 선임행정원
(jj@kopri.re.kr/032-770-8431)

2년마다 개최되는 북극이사회 최고위급회의인 각료회의가 지난 5월 7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해사기구(IMO)가 유일하게 신규 옵서버로 승인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2000년~2013년 사이 가입한 모든 옵서버들의 지위가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는 1996년 북극이사회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각료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한 ‘선례’를 남겼다. 미국이 각료회의 선언문에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이견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각료회의 하루전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캐나다의 북극항로에 대한 권리주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Near Arctic State)’로 지칭하는 데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으며, 북극권 인프라 건설에 대해 투명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북극해를 남중국해처럼 군사화하려 한다는 등의 경고가 담긴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북극이사회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과 다른 북극권 국가의 이견을 좁히고, 북극이사회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또한 우리와 같은 읍서버국가인 중국의 북극 진출에 대한 경계심이 미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북극 거버넌스의 향방이 우리나라 북극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북극이사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각료회의에서의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한 최초의 ‘선례’를 남겨, 향후 북극협력 구심점으로서의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결속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 북극협력 근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신임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아이슬란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동력을 받을 지도 미지수다.

둘째, 기후변화의 땅 북극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제한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다. 북극이사회 회원국 대부분이 기후변화가 북극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파리협약 탈퇴 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 왔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북극권 국가 간 이견을 줄이고,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겼다.

셋째,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는 안보 등의 의제가 북극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에 대한 존중이 지켜지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향후 미국의 양자 관계와 북극문제가 연계되면서 북극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북극정책 추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이상 미국과 중, 러 간 국제관계 대립이 북극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같은 아시아 읍서버국가인 중국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북극 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투자를 앞세운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은 과학연구와 정책협력에 기반한 우리나라 정책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권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에 대해선 예의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북극 정책은 ‘균형’있는 북극협력의 추진과 북극권 국가와 북극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에 기반한 북극 진출 추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결과가 우리나라 북극정책의 큰 틀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국가와 미국의 북동향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북극 진출 행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읍서버 국가들의 북극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중국의 북극 진출 동향과 이에 대한 북극권 국가의 대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북극이사회와 북극권 국가 간 균형 있는 양다자 협력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를 한 축으로 북극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북극권 8개국 상호 이익에 기반 한 양자 협력 또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극권 6개 국가와 양자 북극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미국과도 양자 북극협의회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 북극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북극권 국가와 북극원주민 단체와의 북극 진출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와 KMI가 북극원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는 ‘북극아카데미’와 아시아 유일의 북극협력 플랫폼인 ‘북극협력주간’ 개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과의 협력사업, 북극연구프로그램간 양자협력과 성과, 북극연구인력 교류사업 등 우리나라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북극협력 사업성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 10월 북극규범 최초로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한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CAO 협정)’을 계기로 향후 북극질서 형성 과정과 관련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북극권 국가와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과학연구협력 강화를 통해 북극을 모범적 협력의 장으로 만드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향후 북극 거버넌스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학연구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와 북극 과학연구기지인 ‘다산기지’ 등 우리나라가 보유한 북극과학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극의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한 동향파악, 국제협력, 북극시장진출, 과학협력 등의 전 방위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북극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결과와 쟁점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절반의 성공

■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임기를 마치는 의장국의 리더십이 이뤄낸 성과를 평가하고 새 의장국의 포부와 역점 사업을 보여주는 절차

- 북극이사회는 국제기구가 아닌 정부 간 협의체로 회원국 간 북극이사회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부담 등을 분담하기 위해 2년제 의장국 시스템을 도입했음. 의장국 순번은 캐나다→미국→핀란드→아이슬란드→러시아→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임
- 북극이사회는 8개 북극회원들이 2년의 의장국 기간 중 북극이사회 의제를 주도하며, 2019년 5월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의장국이 핀란드에서 아이슬란드로 전환되었음
-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는 의장국의 2년 임기에 맞춰 2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임기를 마치는 의장국의 리더십이 이뤄낸 성과를 평가하고 새 의장국의 포부와 역점 사업을 들여다보는 절차에 가까움
- 그리고 이를 각료회의 개최지의 이름을 딴, 대략 40~50개 항목의 공동 선언문(Joint Declaration)으로 남겨 8개국 대표가 서명하는 것이 관례임

■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가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개최됐으며, 아이슬란드가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수임

- 2019년 5월 7일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가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개최되었음
- 8개 북극이사회 회원국 외교장관, 6개 원주민 상시참여단체 대표, 6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의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옵서버 대표가 참석했음
- 지난 2년간 핀란드 의장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아이슬란드 의장국의 포부와 역점 사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와 ‘핀란드 의장성명서(Statement by the Chair)’를 채택했음
- 국제해사기구(IMO)가 유일하게 신규 옵서버로 승인되었으며, 2000년~2013년 사이 가입한 옵서버들¹⁾의 북극이사회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결과 모든 옵서버는 그 지위를 재확인했음

- 또한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이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각료회의 개최 전후로 북극이사회에서는 ‘2019년 북극기후변화 업데이트’ ‘북극담수생물다양성현황보고서’, ‘북극미세플라스틱 포함 해양쓰레기 보고서’, ‘북극연결성개선보고서’ 등 성과보고서를 발간했음

표 1.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선언문

연도	선언문	주요내용
1 1998	캐나다 이칼루이트 선언 (Iqaluit Declaration)	- 지속가능한 개발 워킹그룹(SDWG) 출범 - 북극대학교 설립 - 북극환경보호전략(AEPS) 4개의 워킹그룹 통합
2 2000	미국 바로우 선언 (Barrow Declaration)	- 지속가능개발의 기본 틀 채택 및 승인 - 북극 오염물질 제거실행계획(ACAP) 채택 및 승인 - AMAP-CAFF-IASC 공동협력 프로젝트 승인
3 2002	핀란드 이나리 선언 (Inari Declaration)	- 항공, 해상, 지상 수송과 전기통신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중요성 강조 - 생물다양성과 주거지 보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을 위한 협력 강조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 대화 촉구
4 2004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선언 (Reykjavik Declaration)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극지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 인식 - 북극의 기후가 세계적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인식 - 북극 거주 환경 개선과 경제적 기회의 촉진 강조
5 2006	러시아 살레하르트 선언 (Salekhard Declaration)	- SAOs와 북극이사회 워킹그룹에 북극기후변화 지속적 분석 요청 - 북극이사회와 IPY 합동위원회 간 협력에 주목 - 북극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인식
6 2009	노르웨이 트롬쇠 선언 (Tromsø Declaration)	- 단기성기후압력요인(SLCF) 대책 위원회 설립 결정 - 증가하는 북극 해양 접근과 북극해 항해를 위한 국제적 규범 필요성에 주목 - 줄어드는 북극 문화와 원주민 언어에 대한 조치 필요 인식
7 2011	그린란드 누크 선언 (Nuuk Declaration)	-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협정인 항공 해운 구난협정 체결 -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종합적 관심 필요에 주목 - UNFCCC의 목표인 지구 온도 2도 상승 억제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
8 2013	스웨덴 키루나 선언 (Kiruna Declaration)	- 북극 해양 및 항공 교통 기반사업과 계획 비교분석 환영 - 단기성기후압력요인(SLCF) 보고서 환영 및 블랙본 인벤토리 작성 지지 - 북극 유류오염대비대응협약 선언
9 2015	캐나다 이칼루이트 선언 (Iqaluit Declaration)	- 원주민들의 경제 복지, 문화,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전통적 방법의 중요성 인식 - 블랙본과 메탄 배출 감소에 대한 평가와 체결 환영 - 북극 해양 해안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15-2025 북극해양전략 승인
10 2017	미국 페어뱅크스 선언 (Fairbanks Declaration)	- 북극해에서의 중유수송선 사용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와의 논의에 주목 - 북극이 지구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온난화 되고 있음에 주목 - 블랙본과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범 북극 보고서 채택
11 2019	핀란드 로바니에미 장관 성명으로 대체 (Joint Ministerial Statement)	- 위원회가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재차 확인 - 북극의 사회, 문화와 경제의 다양성 인정 - 북극 원주민의 권리와 북극이사회의 고유한 역할 인식

자료 : 북극이사회 홈페이지

1)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승인된 바 있음

■ 이번 각료회의에서 북극 8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례적으로 ‘로바니에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북극에서의 건설적인 협력, 안전, 평화 유지를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실재를 적극 부인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대통령이 된 이후 이러한 입장은 확대 강화되어 결국 2017년 6월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으로 이어진 바 있음
- 2017년 5월 각료회의 당시 ‘기후변화’가 포함된 ‘페어뱅크스 선언문’ 채택을 반대했던 미국을 어렵게 설득한바 있으나, 이번에는 설득이 어려웠으며, 199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북극 8개국이 합의하여 북극이사회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각료 공동선언문(Declaration) 채택에 실패한 채 종료되었음
- 대신 8개국 장관이 서명한 공동명의로 각료성명서와 의장국인 핀란드 외교부 장관의 의장성명서가 단독으로 발표되었음. 1페이지 분량의 각료성명서에는 원칙적인 내용의 총 6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10페이지 분량의 의장성명서에서는 당초 선언문에 담을 내용을 중심으로 각료성명서에 담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표 2.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의 공동성명서와 의장성명서

유형	내용
각료 공동성명서 (Joint Ministerial Statement)	· 평화, 안정, 그리고 건설적인 북극협력 의지 확인 · 북극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있어서 상시참여자외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북극국가들의 주도적인 역할 강조 · 북극에서의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성을 인식하고 거주민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북극환경의 보호의지 확인 · 북극원주민의 권한과 상시참여자의 독창적인 역할, 그리고 원주민들의 의미있는 북극이사회 활동참여를 인식 · 북극이사회의 효율과 효용성 개선, 더 나아가 각료회의와 SAO회의, 그리고 상시참여자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2021년까지 마련될 SAO의 북극이사회 전략계획 수립을 환영 ·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 2년간의 핀란드의 역할에 감사하고 향후 2년간 아이슬란드의 의장국 취임을 환영
의장성명서 (Statement by Chair)	· 각료 대부분이 기후변화를 북극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 · 비북극권에서의 활동이 북극권에 큰 영향을 미침 ·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각국의 노력 필요성 인식 · 북극이사회의 결정에 과학연구, 전통 및 지역지식의 활용 강조 · 환경과 기후, 해양, 사람, 북극이사회 강화 등 4가지 주제로 인식을 정리 (해양관련) · 북극해공해에서의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체결을 환영 · 북극이사회에서 해양관련 이슈를 조정할 SAO기반의 체제 창설 결정 ·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역실천계획 수립을 지지 · 북극선박통행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인지 · 수중소음에 대한 북극국가들의 보고를 환영 · 북극항만의 쓰레기수용시설 제안을 환영하고 폴라코드의 실천을 촉구 · 북극해 중유이용 및 운송, 대체연료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 인지 · 기존의 유류오염대응협정과 구조구난협정의 실천을 요구 (북극이사회 강화 관련) ·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 간의 MOU 체결(5.6) 환영 · 상시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재정적 지원 필요성 인식 · 옵서버의 긍정적 기여 인식을 바탕으로 워킹그룹 내에 옵서버를 위한 특별세션 설립 제안 환영하고 향후 옵서버의 참여 강화를 요청 · 2000-2013 기간 중 가입한 옵서버(우리나라 포함)에 대한 자격을 재확인하고, 2021년에는 그 이전 가입 옵서버와 2017년 가입 옵서버(수위스)에 대한 옵서버 활동 평가 실시 요청 · 국제해사기구(IMO)를 40번째 새로운 옵서버로 환영

자료 : 북극이사회 홈페이지

■ 한편, 향후 2년간 북극이사회는 지속가능한 북극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극해양환경’, ‘기후 및 녹색 에너지 솔루션’, ‘북극 주민과 사회’, ‘북극이사회 기능강화’에 중점을 둘 전망

-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은 북극 8개 회원국과 상시참여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주로 의장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의장국이 지닌 강점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최종 공개됨
- 아이슬란드는 수산업을 주요 경제기반으로 삼고 있는 해양강국이며, 세계에서 첫 여성 수상을 선출한 국가에 걸맞게 세계경제포럼의 세계성평등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10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전력을 100% 수력과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세계 친환경에너지 이슈 논의를 주도하는 등 세계 양성평등과 친환경에너지, 해양경제 부문에서 앞장서고 있는 국가임
- 2019년 5월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를 계기로 핀란드로부터 의장국을 수임한 아이슬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주제 하에 ‘북극해양환경’, ‘기후 및 녹색 에너지 솔루션’, ‘북극주민과 사회’, ‘북극이사회 기능강화’를 중점 추진분야로 발표했다
- (북극해양환경) 특히, 아이슬란드는 향후 2년간 북극이사회에서 북극해양환경 이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추세에 맞춰 최근 북극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극해양쓰레기 이슈를 조명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과 더불어 고위급 해양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할 전망이다
- (기후 및 녹색 에너지 솔루션) 북극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의장국은 북극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관련 업무를 지속 도모하고, 북극에서 녹색에너지솔루션 개발 및 실용화를 장려하겠다고 밝혔으며, 자국의 재생에너지 활용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됨.
- (북극 주민과 사회) 비록 아이슬란드는 ‘원주민’이 없는 유일한 북극 국가이지만, 북극에서 거주하는 400만 명의 원주민과 주민들의 안녕 증진은 북극이사회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양성 평등에 대한 논의를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슬란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성 평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북극이사회 기능강화) 상시참여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지속, 옵서버와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 모색, 책임 있는 경제발전 도모 등을 위해 북극경제이사회와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표 3. 2019-2021년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

주제	'Together Towards a Sustainable Arctic'	
중점 분야	북극해양환경	-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지역실천계획' 수립 - 해양플라스틱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극에서의 '블루 바이오이코노미' 사업 추진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극 해상 운송 증진 - 세계기상기구(WMO)와의 협력 강화 등 환극지 기상·해양협력 추진
	기후 및 녹색 에너지 솔루션	- 기후가 북극 해양·담수·육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찰 및 평가 지속 - 북극 기후변화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 발간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노력 지속 - 북극에서의 녹색에너지솔루션 개발 및 실용화 장려
	북극주민과 사회	- 경제개발을 환경보호 및 사회통합과의 연계성 강화 - 북극경제이사회와 협력하여 통신망 개선 노력 지속 - 양성 평등 관련 논의 장려 사업 추진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강화
	북극이사회 기능 강화	-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상시참여단체 간 긴밀한 협의 지속화 - 옵서버와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 모색 - 책임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극경제이사회와의 협력 강화

자료: Arctic Council, 'Iceland's Arctic Council Chairmanship 2019-2021', 2019.05.

수면위로 부상한 갈등과 공동 선언문 채택 실패

■ 미국과 여타 국가 간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선언문 채택 불발

- 미국은 지난 2017년 6월 1일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음
- 앞으로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채택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기후변화협약의 경우처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많은 북극이사회 관련 전문가들과 원주민단체는 북극의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기후변화 논의 없이 다른 의제를 다루는 것은 큰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음
- 다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성명서와 선언문의 차이는 문서의 길이 뿐이며 합의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극이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입장은 아님을 확인했음

■ 한편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가별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의 북극활동에 대해 내놓은 불만과 경고성 메시지의 내용과 함의에 주목

-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동항로(NSR)에 대해 국제법에 어긋나는 국내규정을 근거로 통제를 추진하고, 북극항로에서 항행의 자유 침해, 군사기지 재가동 등 북극지역의 군사화 활동을 지적했음

- 최근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야말 LNG 성공적 개최에 이어 Arctic LNG-2, Arctic LNG-3 사업 추진으로 2018년 세계 LNG 시장의 점유율 8%에서 2035년까지 20%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²⁾,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경계 확장을 통해 북극 내 관할수역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해서는 ‘근북극 국가’로 지칭하는 데 대한 강한 거부감 표현, 북극권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로 북극해를 남중국해처럼 군사화하려 한다는 등 경고성 연설문을 발표했음³⁾

그림 1. 북극을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립 상황



자료: 서울경제, "북극이사회 협정문 첫 채택 불발...미국의 기후변화 이견 탓", 2019.5.8. 기사

- 캐나다에 대해서는 북서항로(NWP)에 대한 내수로서의 권리 주장이 국제적으로 불법이라고 발언했음
-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훈련 실시, 병력 주둔 강화, 쇄빙선단 구축, 해안경비대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음
- 한편, 러시아와 중국, 캐나다는 곧바로 미국의 주장에 반박하고 기존의 자국 주장을 재차 강조하였음.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캐나다가 북서항로 운항의 안전에 책임이 있듯이 러시아는 북동항로 운영과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으며⁴⁾, 캐나다는 폼페이오의 '불법' 주장에 대해 매우 비외교적인 태도라고 언급했음⁵⁾
- 중국은 평화적 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고,⁶⁾ 개방성, 협력,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학연구와 환경보호, 합리적 이용과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음⁷⁾

2) 지난 2019년 4월 개최된 제5차 국제북극포럼은 52개국 3,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포럼 기간 중 45건의 투자계약 체결로 700억 루블(약 11억 달러 규모)의 북극권 투자 유치율 달성했음

3) 관련 연설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중국이 근북극 국가(Near-Arctic State)라고 지칭하지만 중국과 북극권역 사이는 가장 가까운 곳도 900마일(약 1,450km) 이상 떨어져 있다. 세상에는 북극 국가와 북극 국가가 아닌 나라가 있을 뿐이지 북극과 가까운 나라 같은 제3의 분류는 없으며, 달리 주장한다고 해서 중국이 북극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2)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이 북극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은 거의 900억불 이상으로 중국은 중국 자금, 중국 회사, 중국 인부로 핵심적인 인프라 건설을 시도하며 몇몇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안보차원에서 입지 구축을 시도한다. 중국이 다른 곳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 패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중국이 북극을 어떻게 취급할지를 알려준다."

4) 러시아 타스통신, <http://tass.com/world/1057500>, 2019.5.8. 기사

5) 해외기사, <https://nationalpost.com/opinion/david-j-bercuson-pompeo-is-blunt-but-right-about-canadas-north>, 2019.5.21. 기사

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886&code=11141400&cp=nv>, 2019.5.8. 기사

해외기사, <https://nationalpost.com/opinion/david-j-bercuson-pompeo-is-blunt-but-right-about-canadas-north>, 2019.5.21. 기사

7) 이러한 각료회의에서의 갈등으로 바로 이어 5.10~11에 상해에서 개최된 "북극서클 중국포럼"이 주목을 받았는데, 포럼에 참석한 미국의 Lisa Murkowski 상원의원(알래스카)은 북극이사회는 당초 출범 취지대로 북극 8개국의 공통문제인 북극 환경보호

정책 시사점 및 대응방안

북극협력 구심점으로서의 결속력 약화 우려

■ 북극이사회 창설 후 처음으로 각료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한 ‘선례’로 기록

- 이번 각료선언문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합의되지 못하고 표면화됨으로써 향후 북극이사회 기능과 운영에 대한 전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러시아,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원주민단체인 ICC 총의장인 삼보 도로(Sambo Dorough)는 이번 결정이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며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북극이사회 운영에 큰 충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으며, 그린친 원주민 위원회 의장인 에드워드 알렉산더(Edward Alexander) 또한 미국의 태도는 북극원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음⁸⁾
- 또한 차기 의장국 2년간의 주요 북극이사회 정책이 제시되어 왔던 합의된 공동 선언문의 부재로 인해 워킹그룹을 포함한 체계적인 북극이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안보를 의제로 삼지 않는 북극이사회 내부 원칙과 안보 전략 등의 이유로 북극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에 대한 믿음이 지켜지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음.⁹⁾

■ 북극협력 근간은 유지, 아이슬란드 의장국 프로그램 추진 동력 확보는 지켜 봐야

-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 실패가 북극이사회 워킹그룹별 전문가그룹-워킹그룹 전체 회의-고위급회의(SAO)를 거치면서 형성된 북극협력에 대한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제약 요인으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음
- 다만 공동선언문의 부재로 아이슬란드 의장국 방침이 북극이사회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이나, 2년 뒤인 2021년에 그 성과가 만장일치 의사결정 체제를 가진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으로 합의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움

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중요한 정책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 투명한 투자 요청과 함께, 북극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 8) 해외기사, <https://nunatsiaq.com/stories/article/inuit-leaders-condemn-arctic-councils-lack-of-consensus-on-climate-change/>, 2019.5.8. <https://truthout.org/articles/us-plays-word-games-in-arctic-council-consensus-while-ignoring-indigenous-people/>, 2019.5.11. 기사
- 9) 실제로 1996년 9월 19일 오타와 선언문에서는 ‘북극이사회는 군사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서는 안된다(The Arctic Council should not deal with matters related to military security)’는 명문 규정을 두어 군사안보관련 이슈를 배제한 바 있음. 그림슨 대통령도 2019년 4월 인터뷰를 통해,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극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양자다자 협력이 멈추지 않았고, 북극권 연안 5개국 간 영유권 분쟁이 없지 않음에도 이것이 북극이사회의 정상운영이나 이를 토대로 한 북극현안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음. Ólafur Ragnar Grímsson 북극서를 의장 인터뷰, https://www.rt.com/show/sophienco/456310-arctic-circle-future-iceland/?fbclid=IwAR259DHLHjdSTxEx664IGdQHe9FtZyTy-tO_EEfgxuWgtkKHMqv-3gSzTqNQ, 2019.4.13. 기사

기후변화의 땅 북극에서 ‘기후변화’ 대한 컨센서스 도출 과제 남겨

■ 북극이사회 각료 대부분이 기후변화가 북극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후변화’ 용어 사용을 거절

- 미국이 북극의 기후변화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지난 4월 미국연안경비대가 발표한 「2019 신 북극 전략」에서도 드러남
- 새로운 북극전략은 미국의 북극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 요인, 심각한 자원-능력 격차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러의 북극권 개발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음
- 특히 ‘기후변화’라는 용어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북극의 기후 손상, 환경변형(environmental transformation) 등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하였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가 결정된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지지하는 이번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정치적 모순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음

■ 북극이사회 워킹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과 성과확산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

- 미국을 제외한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북극원주민 단체들은 기후변화 논의 없이 다른 아젠다를 다루는 것은 큰 결함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에서 추진되고 기후변화 관련 사업들이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이며, 북극이사회 고위급회의(SAO)와 각료회의 등에서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타 회원국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향후 2년 간 북극이사회를 이끌 아이슬란드의 의장국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및 녹색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아이슬란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북극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향방에 주목해야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관계와 북극문제가 연계·확대될 가능성 커져

-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발언 시점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첨예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미국 해안경비대 쇄빙선단과 잠수함 확충에 관한 재정배분 건이 미 하원에 오랜 기간 계류 중인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내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간 기후변화와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북극의 긴급 현안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북유럽 북극권 국가와 캐나다 등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음¹⁰⁾
- 그러나 이번 미국의 북극에서의 對중국 견제로 중국과 북극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권 국가들은 미국의 입장도 계산식에 넣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실제로 중국 기업을 활용한 그린란드 공항 건설 계획은 덴마크 당국의 거부로 좌절된 바 있으며, 스웨덴 라이세킬(Lysekil) 지역 심해항만에 대한 중국의 투자 계획도 중간에 백지화 된 바 있음¹¹⁾

■ 미국의 적극적 행보가 북극 거버넌스에 미칠 향방에 주목해야

- 미국은 그간의 수동적인 참여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물리적, 군사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북극 활동을 위한 정당성 획득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음¹²⁾
- 일례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린란드에 외교공관 재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¹³⁾
- 특히 아이슬란드는 미국과 군사·외교적 협력관계에 있는 NATO 동맹국임. 아이슬란드 이후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어 있어 미국은 아이슬란드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현 시점이 미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아이슬란드 의장국 기간 동안 미국이 어떠한 행보를 통해 북극 거버넌스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균형’있는 협력과 ‘북극진출’ 공감대 확보 노력 필요

■ 북극정책 큰 틀을 유지하되,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이번 각료회의에서 공동 선언 채택은 실패했지만, 북극협력 협의체로서의 북극이사회 역할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 북극정책의 큰 틀 역시 유지될 전망이다

10) <https://www.highnorthnews.com/en/china-will-look-to-treat-pompeo-speech-simply-road-damage-be-routed-around>(2019. 5. 17. 검색)

11) Lim, Kong Soon. 2018. "China's Arctic Policy & the Polar Silk Road Vision", in Lassi Heininen and Heather Exner-Pirot (eds.) *Arctic Year Book 2018: Arctic Development In Theory & In Practice*. (Akureyri, Iceland: Northern Research Forum), p. 430.

12) 북극 빙하 속에 숨은 미국의 미래전략, 나지원,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2017.7, p. 3

13) "Secretary Pompeo Postpones Travel to Greenland (Press Statement by Morgan Ortogus / MAY 9, 2019)", <https://www.state.gov/secretary-pompeo-postpones-travel-to-greenland/> 2019. 5. 18. 검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국가와 미국의 북동항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어¹⁴⁾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북극 정책의 이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중국의 적극적인 북극 진출 행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옹서버 국가들의 북극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중국의 북극 진출 동향과 이에 대한 북극권 국가의 대응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북극이사회와 북극권 국가 간 균형 있는 양·다자 협력의 일관된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옹서버 국가 지위를 얻은 2013년에 국가 차원의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양다자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북극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협력 레짐으로서의 북극이사회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번 제11차 북극각료회의에서 보여주었음
- 따라서 북극이사회를 한 축으로 북극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북극권 8개국 상호 이익에 기반 한 양자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극권 6개 국가¹⁵⁾와의 양자 북극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양자 북극협의체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극권 국가 및 북극원주민과의 공감대 확보에 기반한 북극 진출 모색해야

- 구겐하임파트너스는 북극인프라 자원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¹⁶⁾, 올 해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2030년까지 북극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약 181조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 118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¹⁷⁾
- 이번 각료회의에서 미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북극항로가 21세기에는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의 역할을 할 것이며, 북극항로 개척, 자원개발 등을 통해 경제적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음. 또한 중국과 같은 공격적이고 불투명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투명한 투자는 환영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북극이 투자처로서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표명했음
- 우리나라도 북극이 주는 경제적 기회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장기 북극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 북극원주민들과 북극권 국가와의 교감에 기반 한 북극 진출을 모색해야함

14) 특히 중-러가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북극해 지역에서의 공동군사 훈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미 국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언론 기사, <https://ria.ru/20190304/1551538315.html>, 2019.3.4. 기사.

15) 북극권 8개국 가운데 스웨덴과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인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캐나다와는 양자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음

16) Guggenheim Partners,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ctic’, 2018

17) 뉴시스, ‘러시아, 2030년까지 거액 들여 북극권 광물자원 개발’, 2019.3.14.일자 기사

- 이러한 측면에서 북극원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는 ‘북극아카데미’와 아시아 유일의 북극협력 플랫폼인 ‘북극협력주간’ 개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과의 협력사업, 국책 북극연구프로그램 간 양자협력과 성과, 북극연구인력 교류사업 등 우리나라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북극협력 사업성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8년 10월 북극규범 최초로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한 ‘중양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CAO 협정)’을 계기로 향후 북극 질서 형성 과정과 관련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북극권 국가와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과학연구협력 강화를 통해 북극을 모범적 협력의 장으로 만드는 노력 지속해야

- 이번 각료회의는 북극이사회 회원국 간 자국의 국익과 협력 추진에 있어 상충할 수 있는 점점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북극이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권 및 비북극권 국가 간 기후변화 연구, 탐사와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연구는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북극을 공존과 협력의 장으로 인식하고 과학연구협력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모범적 북극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북극 거버넌스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추진할 수 있는 과학연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와 북극 과학연구 기지인 ‘다산기지’ 등 우리나라가 보유한 북극과학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적극 추진해야 함
- 마지막으로 북극의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한 동향파악, 국제협력, 북극시장진출, 과학협력 등의 전방위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북극정책의 추진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병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URL: <https://www.kmi.re.kr/>